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6.09.23.(금)
평의원정원 : 11명	출석평의원 : 9명

1. 회의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14시 30분
2. 회의장소 : 대학본부 5층 회의실(E4)
3. 평의원출·결 및 기타 참석자 현황
 - 가. 출석의원 : 이현주, 이동열, 박찬수, 노재학, 남우현, 이원봉, 오근영, 유지권, 임지혁
 - 나. 불참의원 : 송인혁, 강경아
 - 다. 기타참석자 : 송도선(교무처장), 이정민(기획팀장)

4. 회의안건

- 가.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심의

5. 회의내용 :

의장(이현주)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참석자 확인 및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팀장은 성원보고 바랍니다.

기획팀장(이정민)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이정민입니다. 대학평의원회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의원 11명 중 9명의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이어 회의 진행순서를 설명하다.)

의장(이현주) 그럼, 기획팀장의 성원보고대로 성원되었으므로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설명을 위해 송도선 교무처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처별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무처의 개정(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송도선) 교무처장입니다. 배포해드린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의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어 배포된 유인물 내용을 설명하다)

의장(이현주) : 이어서 학생복지처의 개정(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원봉) 학생복지팀장입니다. 배포해드린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의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어 배포된 유인물 내용을 설명합니다)

의장(이현주) : 이어서 총무처의 개정(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남우현) 총무과장입니다. 배포해드린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의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어 배포된 유인물 내용을 설명합니다)

의장(이현주) : 본격적인 의견 개진에 앞서 회의자료에 별첨된 공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교육부의 공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 수립요청이고 두 번째는 ‘육아휴학 제도 학칙 반영’ 요청이며, 마지막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학사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정책으로 대학에서 반듯이 학칙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제도를 운영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에 참조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박찬수) : 학칙 일부 개정 취지와 위원장님의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 제27조(성적)의 제5항을 보면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란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절대평가를 해야하는 학과가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삽입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송도선) 네, 관련조항은 고등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대학의 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적분포를 대국민 공시하게 되어 있으며, 공시된 자료는 각종 대학의 평가의 정량지표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평가라는 대원칙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다만,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절대평가 할 수 있다’ 추가하였습니다.

의원(박찬수)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유지권) : 개정(안)을 보면, 제34조(학생회 회비) 조항이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인가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이원봉) : 본조항은 우리대학의 학생회칙 제18조 제1항에 학생회비를 납부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는 각종 규정과 학사업무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대학 학사편람' 을 참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유지권) : 설명 감사합니다.

의원(이동열) : 배포된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의장님과 각부서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대로 학생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안과 다소 모호했던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원(오근영) :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회의 안건 / 은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을 정비하는 차원의 필요 이해하고 있기에,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이현주) :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원(임지혁) :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에 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제청합니다.

(의원 전원이 의견 없음을 제청하다)

의장(이현주) :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학생들의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보다 노력하는 자세로 심의 의결해 주신 학칙의 규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회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학평의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할 것이며, 대학평의회규정 제8조(회의록)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을 포함한 유지권의원, 남우현의원, 박찬수의원 이렇게 4명을 대표서명자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이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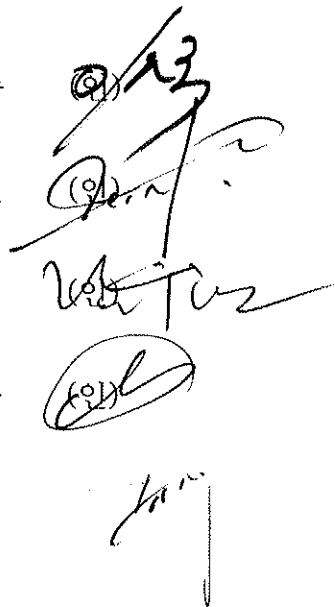
의장(이현주)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대학평의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이어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하다)

의 장 이 현 주

평 의 원 유 지 권

평 의 원 남 우 현

평 의 원 박 찬 수



1 /

11

14

2016. 09. 28

우송정보대학 대학평의원회

[별첨] 참석의원 서명부 1부.